

의안번호	제405호
의결 연월일	2012년 10월 일 (제315회)

**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의자	김재중의원 외 7명
발의연월일	2012년 10월 9일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4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10월 9일
발 의 자 : 김재중, 박문희, 이광희,
김종필, 손문규, 최미애,
노광기, 박종성 의원

□ 주 문

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를 위해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합니다.

□ 제안이유

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

붙임 :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를 위해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일시 : 2012. 10. 18. 〈1일간〉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집행부제출 안건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질의·답변
- 출석대상
 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 -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·단·본부장(공보관·여성정책관 포함) 이상 간부공무원